

#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건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63
----------	------

발의년월일 : 2017년 8월 21일  
발 의 자 : 신건택, 김영한, 김진수,  
김진영, 김진철, 김현기,  
남창진, 맹진영, 박마루,  
박성숙, 박중화, 우미경,  
유 용, 이명희, 이성희,  
이혜경, 조상호, 주찬식,  
최호정 의원(19명)

## 1. 제안이유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조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고 있으며, 근로감독관의 자격·임면과 직무배치 등에 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들의 역할은 임금·근로시간·유급휴가·산업안전 등의 준수여부를 관리·감독하며 또한, 이를 위반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의 역할도 맡고 있음.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에 관한 업무, 여성근로자 보호에 관한 업무, 최저임금에 관한 업무 등 비정규직 문제와 연령에 따른 고용차별 점검, 퇴직급여까지 이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업무가 한층 넓어지고 있으며 노동문화에 대해 다양하고 전문적인 근로감독관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 되고 있는 실정임.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근로감독관 한 명이 노동자 1만2천500명, 사업장 1천450곳을 담당해야하는 등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근로감독관은 감독관 수에 비해 사업장이 너무 많아 실질적인 감독기능이 떨어지고 있어 서울시가 일정 역할을 떠안아 지방 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기능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서울시 본청·사업소, 산하 투자·출자·출연기관 및 서울시 업무를 수탁받은 위탁기관을 대상으로 노동권 침해와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조사하고 위반내용에 대해 시정권고 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노동조사관’제도를 도입·운영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노동조사관제도의 도입·운영을 위한 근거 및 권한 등의 조항을 신설함(안 제21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근로기준법」 제104조~108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노동조사관) ① 시장은 근로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동조사관(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5명 이내의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한다.

1.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한 후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노동 관련 국제기구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민간 기업의 노무부서, 노동조합 등 법인 및 단체에서 노동 관련 활동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 노동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조사관은 다음 각 호 기관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1.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와 서울 소재 자치구의 구청장이 해당 자치 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조사를 의뢰한 사항에 한한다.)
  3. 시 산하 투자·출자·출연기관
  4. 시의 업무를 수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
- ④ 조사대상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u>제21조(노동조사관)</u> ① 시장은 근로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동조사관(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p> <p>②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5명 이내의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한 후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li> <li>2. 노동 관련 국제기구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민간기업의 노무부서, 노동조합 등 법인 및 단체에서 노동 관련 활동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 노동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li> </ol> <p>③ 조사관은 다음 각 호 기관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li> <li>2.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와 서울 소재 자치구의 구청장이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조사를 의뢰한 사항에 한한다.)</li> <li>3. 시 산하 투자·출자·출연기관</li> <li>4. 시의 업무를 수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li> </ol> <p>④ 조사대상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p>

#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조(노동조사관) 채용에 따라 비용 발생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

나. 추계결과 ≙ 1,396,295 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연평균 279,259 천원임

- 추계의 전제

- 비용은 2018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임기제 6급 5명 채용 전제
- 서울시 공무원 정원 증원 전제(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제1항 제5호는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원 증원에 따른 비용발생 전제)
- 연봉지급 하한액 기준
- 연봉은 본봉,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경비, 초과근무수당으로 구성
- 본봉은 최근 5년 평균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3%) 반영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 비용(합계) ≙ 1,396,295 천원

$$\text{총비용} = \sum_{i=1}^5 (\text{노동조사관 급여})_i$$

$i$  = 비용추계 연차(2018년~2022년)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018)	2차년도 (2019)	3차년도 (2020)	4차년도 (2021)	5차년도 (2022)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노동조사관 급여(제27조)	264,850	271,842	279,043	286,460	294,100	1,396,295
	소계(b)	264,850	271,842	279,043	286,460	294,100	1,396,295
□ 총 비용(b-a)		264,850	271,842	279,043	286,460	294,100	1,396,295

○ 연도별 총급여 내역

- 본봉은 인건비 상승률(3%) 적용
-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경비, 초과근무수당 등 제수당은 인건비 상승률 미반영

(단위 : 천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본봉	233,050	240,042	247,243	254,660	262,300	1,237,295
정액급식비	7,800	7,800	7,800	7,800	7,800	39,000
직급보조비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75,000
특정업무경비	3,000	3,000	3,000	3,000	3,000	15,000
초과근무수당	6,000	6,000	6,000	6,000	6,000	30,000
합 계	264,850	271,842	279,043	286,460	294,100	1,396,295

○ 연간 총급여 : 노동조사관 연봉 × 5명

- 264,850천원 = 52,970천원 × 5명
- 1인당 연봉 : 본봉 + 정액급식비 + 직급보조비 + 특정업무경비 + 초과근무수당
  - 52,970천원 = 46,610천원 + 1,560천원 + 3,000천원 + 600천원 + 1,200천원
  - 본봉(임기제 6급 하한액) : 46,610천원
  - 정액급식비 : 130천원/월 × 12개월 = 1,560천원
  - 직급보조비 : 250천원/월 × 12개월 = 3,000천원
  - 특정업무경비 : 50천원/월 × 12개월 = 600천원
  - 초과근무수당 : 100천원/월 × 12개월 = 1,200천원

※ 서울특별시 재무과 자료 참조

- 연간 총급여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월	연간	인원	총급여
본봉		46,610	5	233,050
정액급식비	130	1,560	5	7,800
직급보조비	250	3,000	5	15,000
특정업무경비	50	600	5	3,000
초과근무수당	100	1,200	5	6,000
합 계		52,970		264,850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예산분석관        이정수

☎ 02-3705-1280

e-mail : intezer@seoul.go.kr